

충청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(안)

검 토 보 고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1999년 2월 20일

나. 회부일자 : 1999년 2월 20일

3. 제안이유

가.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주요사업 투자심사시 공무원 위주의 단хин행정을 지양하여 지역주민 참여폭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재정운용의 계획성, 건전성제고 및 열린도정 실현

나. 중기재정계획 위주의 현행규정에 투자심사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문화

4. 주요골자

가. 위원회 구성시

· 공무원수를 총위원회수 1/3 이내로 제한(안 제2조 제3항)

나. 간사의 직위를 격상

· 주무담당 → 주무과장(안 제2조 제4항)

다. 위원회 기능 및 위원회 개최 조항에 “주요사업투자
심사”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문화(안 제5조 및 제 6조)

5. 검토의견

충청북도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을
검토한 바

본 조례는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도지사의 자문
에 응하기 위하여 1992년 5월 29일 충청북도조례 제
1988호로 제정된 조례로서

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역주민의 참여폭
을 확대하는등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
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

그 주요내용으로는

지방재정법 제30조의3 제2항의 개정예 따라 당초 위원
18인에서 9인으로 조정됨에 따라 총위원 9명중 공무원
수를 1/3 이내로 제한하고,

직제개편에 따른 관직명칭 변경과 간사의 직위를 주무
담당에서 주무과장으로 격상하였으며,

위원회의 기능에 투자심사 관련사항을 명문화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붙 임

- 충청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(안)